

# 보험가입 2일후 중대질병 사망과 고지의무위반 - 대법원 2019.4.23. 선고 2018다281241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최 병 규\*

<차례>

- |   |               |
|---|---------------|
| I. 머리말                                      | IV. 독일의 논의    |
| II. 대상판결 - 대법원 2019.4.23. 선고 2018다281241 판결 | V. 분석과 제도운용방안 |
| III. 고지의무와 그 위반                             | VI. 맺음말       |

주제어 : 사행계약, 선의성, 고지의무, 고의·중과실, 인과관계, 제척기간, 중요한 사항, 계약해지

<국문초록> 민영보험제도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험제도 가운데 제일 중요하면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 고지의무 부분이다. 고지의무는 보험제도가 사행성, 선의성을 특징으로 하는 점과도 결부되어 있다. 비록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수치스럽다 하여도 고지를 하여야 한다. 만일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고 그 밖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여러 요건을 충족하면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보험영역에서는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험제도는 선의성, 사행계약성을 특징으로 한다. 보험자는 정보를 보험계약자에 의존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를 인정하되 법에서는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여 놓고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야 하고 인과관계도 따진다. 고지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다.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의 인수여부 및 보험료액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생각되는 사실을 말한다. 중요한 사항 여부는 결국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중요한 사항 여부의 판단주체는 보험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보험자가 아니며, 법원이 사건을 해결함에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논문접수일(2019.12.31), 심사개시일(2020.01.28), 게재확정일(2020.02.16)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인 위험인수 기준에 대한 의인화된 개념으로서의 보험자이다. 이 글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사안의 경우에 계약체결이 다소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즉 노래방 주인이 노래방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였다. 그리고 보험가입 2일 후 피보험자가 폐결핵으로 사망한 경우이었다. 폐결핵 질병은 없다고 갑자기 생겨나는 질병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인 노래방 주인이 종업원의 질병을 인지하고 보험가입에 나아갔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고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보험자는 제척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지하지 아니한 질병사항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대상 판결의 판지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앞으로 고지의무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유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를 통하여 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I. 머리말

오늘날 민영보험제도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sup>1)</sup> 보험제도 가운데 제일 중요하면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 고지의무 부분이다. 고지의무는 보험제도가 사행성, 선의성을 특징으로 하는 점과도 결부되어 있다. 비록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수치스럽다 하여도 고지를 하여야 한다. 만일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고 그 밖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여러 요건을 충족하면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보험영역에서는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 고의·중과실의 의미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독일의 논의와 판례 등도 고찰한다.

1)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54쪽, 보험경영연구회, 「보험론」, 문영사, 2005, 58쪽.

## II. 대상판결 - 대법원 2019.4.23. 선고 2018다281241 판결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보험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을 보험사 측에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나모씨가 P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이때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해 그 사실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해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피보험자인 김모씨가 앓은 폐결핵은 발열, 체중감소, 식욕부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김씨의 동거인은 김씨가 사망 2주전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출근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결핵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경과가 악화되어 사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김씨의 동거인이 ‘김씨의 건강이 악화되어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원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해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에 있어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씨는 2014년 9월 P보험사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김씨를 피보험자, 수익자를 나씨 본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

하였다. 이 보험에는 김씨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보험계약 이틀 후 김씨는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나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P보험사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P보험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몸이 아픈 것을 숨겼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1,2심은 “결핵증상은 감기나 다른 폐질환 또는 담배로 인한 증상으로 취급되어 증상으로만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하면서 “보험계약자인 나씨와 피보험자인 김씨가 폐결핵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거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나씨의 손을 들어주었다.<sup>2)</sup>

### Ⅲ. 고지의무와 그 위반

#### 1. 고지의무의 내용

이 글에서 검토하는 판례에서 특히 문제되는 점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과 보험계약자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이다. 고지의무에 대한 논점은 많지만 이곳에서는 이 두 가지 점에 중점을 두어 고찰한다.

##### 1)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데(상법 제651조), 이를 고지의무 또는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한다. 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에 즈음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측정하는데 보험자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진실하게 알릴 것을 요구하는 보험계약상의 특수한 의무이다.<sup>3)</sup> 이 의무위반의 경우에 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이 인정될 뿐 보통의 의무에서 가능한 이행강제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못한다. 이러한 종류의

2) 법률신문 2019년 5월 8일자.

3) 장덕조, 「보험법」 제4판, 법문사, 2018, 124쪽.

의무를 책무(Obliegenheit), 간접의무 또는 자기의무라고 한다. 고지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다.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의 인수여부 및 보험료액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생각되는 사실을 말한다.<sup>4)5)6)</sup> 중요한 사항은 절대적 위험사항, 관계적 위험사항 및 추단적 위험사항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sup>7)</sup> 중요한 사항 여부는 결국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다.<sup>8)</sup> 이는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중요한 사항 여부의 판단주체는 보험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보험자가 아니며, 법원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인 위험인수 기준에 대한 의인화된 개념으로서의 보험자이다.<sup>9)</sup> 현행 상법상 질문표에 기재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상법 제651조의 2). 주요국가들은

4)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193쪽.

5)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농사일을 하는데도 전업주부라고 고지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9.5.9. 선고 2018가단5084092 판결) - 집 앞마당에 작물 등을 재배하고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도 하고 있었지만 상해보험 계약시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만 기재한 여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2019년 5월 A씨가 X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였다. 강원도에 사는 B씨는 2016년 12월 X보험사와 상해사망 특약 등이 담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B씨는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 적고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기재하지 않았다. B씨는 이듬해 6월 텃밭에서 일하다 발열·설사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뒤 중증 혈소판 감소증으로 사망하였다. 당시 B씨는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었고 죽은 진드기 2마리가 몸에서 발견됐다. B씨의 아버지인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X보험사는 상법과 약관이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A씨는 "집 앞마당 조그만 텃밭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자가 취식을 목적으로 채소를 기른 것이기에 농작물 재배원이나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유 판사는 "보험사가 기재를 요구한 질문은 보험계약상 특약사항으로 '일반상해사망'에 관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추정자료이므로 계약당사자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인데, B씨는 농사일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고 직업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겸업으로 농업을 했는데도 전업주부라고 기재하고 겸업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하였다.

6)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27971 판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느냐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보험의 기술에 정통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7) 김형진,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적 연구, 건국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20.02., 13쪽.

8) 송옥렬, 「상법강의」, 제6판, 홍문사, 2016, 254쪽.

9) 박세민, 「보험법」, 제4판, 박영사, 2017, 196쪽.

2007년을 전후하여 고지의무를 보험자가 물어보는 것을 답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수동적 답변의무화를 입법을 하였다.<sup>10)</sup> 우리의 경우에도 수동적 답변의무화를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고의 또는 중과실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으로 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 때 고의는 중요사항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것 또는 허위인 줄 알면서 고지하는 것이다. 즉 고의는 어느 사실의 존재와 그 사실의 중요함, 나아가서는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임을 알고서 고의로 묵비하거나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다.<sup>11)</sup> 이 경우 해의는 필요하지 않다.<sup>12)</sup> 고의는 사기보다 그 인정범위가 넓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고지의무제도가 불량위험을 배제하고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데 기여한다.<sup>13)</sup> 중대한 과실이란 보험계약자 등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제대로 고지할 수 있었을 것을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것을 뜻한다.<sup>14)</sup>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첫째는 고지사항 자체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은 포함되지 않고 고지·불고지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된다고 보는 것이 하나의 견해<sup>15)</sup>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고의와 거의 동일시되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상법 제651조의 취지라고 본다면 고지사항 자체를 중과실로 모른 경우도 포함한다는 견해<sup>16)</sup>이다. 대법원 판례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였다.<sup>17)</sup> 보험계약자측에서 적극적

10) 이에 대하여는 김형진, 전계 박사학위논문, 72쪽, 한기정, 「보험법」, 제2판, 박영사, 2018, 207쪽 참조

11) 한창희, 「보험법」, 개정3판,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7, 210쪽.

12) 유주선, 「보험법」, 도서출판 씨아이알, 2018, 63쪽.

13) 최정식, 「보험·해상법」, 삼영사, 2014, 131쪽.

14)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5, 122쪽.

15) 김은경, 전계서, 199쪽, 양승규 전계서, 122쪽, 정상근, 「보험계약법」, 도서출판 좋은땅, 2006, 86쪽,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17판, 박영사, 2015, 567쪽,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제9판, 삼영사, 2015, 120쪽.

16)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105쪽; 채이식, 「상법강의(하)」, 개정판, 박영사, 2003, 458쪽; 최기원,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02, 173쪽.

17)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다54631,54648 판결: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탐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자의 입장이 타당하다.

## 2. 우리 법제의 평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중요한 사항에 국한된다. 아직 우리의 경우는 고지의무의 수동화를 입법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응 중요한 사항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례에서는 이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일반인들이 무엇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종의 고지촉구의무를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질문하지 않은 사항을 청약서 여백에 기재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sup>18)</sup> 그리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야 한다. 고지의무에 대한 약관은 법률을 반복하는 경우에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과거 주운전자제도가 있을 때 고지의무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바 있다.<sup>19)20)</sup>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 동지의 판례: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27971 판결 -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8)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27971 판결: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청약서의 양식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있는 경우에 그 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위반의 여지가 없고 보험계약청약서양식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인 대성렌트카가 그 청약서의 여백에다가 피보험차량이 지입차량으로서 지입차주에 의하여 유상운송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특별히 부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는 김명수, 「보험판례개관」, 법문사, 2013, 83쪽 참조

19) 대법원 1996.4.12. 선고 96다4893 판결: “주운전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내용용, 특히 그 부실 고지의 경우에 입게 되는 계약해지의 불이익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그 판시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가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무리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주운전자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해지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설명의무 위반의 입증책임 및 그 증명 정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는 이성남, 「보험모집규제론」, 마인드맵, 2017, 214쪽 참조

그런데 고지의무대상 사항을 담은 약관이 모두 설명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 판단을 요한다.<sup>21)22)</sup>

## IV. 독일의 논의

독일은 2007년 보험계약법을 개정하면서 고지의무 부분에 변경을 기하였다. 수동적 답변의무화를 규정하여 보험자가 질문한 사항을 답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고지의무의 대상인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 1. 독일의 법제와 논의

#### (1) 보험자의 질문

2007년 개정 이전에는 보험자의 질문은 중요한 사항을 암시하는 것에 불과하였었다(독일 구 보험계약법 제16조 제1항 제3문).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텍스트형식으로 질문한 사항에만 답하면 된다.

20)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7255 판결: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는 이준교·정찬목, 「판례를 통하여 배우는 보험이론 및 분쟁실무」, 보험연수원, 2017, 11쪽 참조

21)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39192 판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질문표의 상단에 그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소외 2는 소외 1에게 질문표 제4항에 기재된 12개 주요 질병 내지 그 소인의 최근 5년 내 보유 여부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있는지 물어보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표시하라고 하였는데, 소외 1이 그 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답하면서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피보험자의 질병과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질문표 제4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주요 질병 또는 그 소인의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없더라도 통상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라면 그 내용과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2가 위와 같이 소외 1에게 질문표에 의하여 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그에 대한 명시·설명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22) 이준교·정찬목, 「판례를 통하여 배우는 보험이론 및 분쟁실무」, 보험연수원, 2017, 11쪽.

## 1) 자진한 고지

2007년 보험계약법 개정으로 인하여 물어보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을 자진하여 고지하여야 하는 내용이 바뀌게 되었다.<sup>23)</sup> 이와 같이 자진하여 고지하여야 할 내용이 사라진 것이 악의의 기망의 취소가 보험자가 텍스트형식으로 질문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독일의 입법이유는 보험자가 질문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묵비한 경우에도 독일 민법 제123조에 의한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sup>24)</sup> 따라서 악의의 기망을 하지 않을 것에는 우리 민법 제2조에 해당하는 독일 민법 제242조 또는 독일 민법 제241조 제1항과 같은 청구권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악의의 기망을 하지 않을 의무는 한편으로는 개시관계(Anbahnungsverhältnis), 다른 한편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다. 법률에는 원래 개정안 논의시에 있었던 개정안 제21조 제5항은 입법되지 아니하였다. 동 제안은 구법 제18조를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 개정안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악의의 기망에 대해 취소하기 위하여 텍스트형식으로 질문하여야 하는 것이 요건으로서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sup>25)</sup> 자진한 고지의무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19조<sup>26)</sup>에 대하여서만 없는 것이다. 동 제19조에는 보험자의 형성권(해제, 해지, 계약조정)이 규정되어 있다. 독일 민법 제123조에 의한 취소권은 독일 보험계약법 제22조<sup>27)</sup>에 의하여 영향없이 존속한다. 악의의 고지의무 위반은 독일 보험계약법 제21조<sup>28)</sup> 제2항 제2문에서 역할을

23) Grote/Schneider, BB 2007, S. 2692.

24) BT-Drucks. 16/3945, S. 64.

25) Reusch, VersR 2008, S. 1179.

26) 독일 보험계약법 제19조(고지의무) (1) 보험계약자는 합의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보험자가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상황과 보험자가 텍스트형식으로 질의한 것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진 위험상황을 계약의 체결의사를 보낼 때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의사표시 후에, 그러나 계약의 인수 전에 제1문의 취지에 따른 질문을 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 ....(6) 제4항 제2문의 경우 계약변경을 통해 보험료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고지되지 아니한 상황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통지가 도달한 후 한 달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통지에서 이상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27) 독일 보험계약법 제22조(악의의 기망) 악의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보험자의 권리는 배제되지 않는다.

28) 독일 보험계약법 제21조(보험자의 권리행사) (1) 보험자는 제19조 제2항에서 제4항에 근거하여 부여된 권리를 한 달 안에 서면으로 주장할 수 있다.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위반을 안 때로부터 기산점은 시작된다. 보험자는 권리를 실행할 때 자신의 의사표시를 받쳐주는 상황을 알려야 한다; 그

한다.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인과관계가 없을 때에는 급부의무가 존속한다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21조 제2항 제1문은 악의의 고지의무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채무법의 원리에서처럼 인과관계요건 미충족의 경우이더라도 일반예방 차원<sup>29)</sup>에서 악의의 행위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 2) 일반질문

2007년 개정법은 중요한 사항을 텍스트형식으로 질문하여야 하는 보험자의 의무를 입법화하였다.<sup>30)</sup> 그로써 독일 입법자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한 것이다.<sup>31)</sup> 그리하여 법개정 이전에는 보통 행하여졌던 “일반적 질문(Generalfragen)”(가령 의료보험에서 최근 5년 동안의 질병)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일반 질문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고 입법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sup>32)</sup> 자신의 질문이 중요한 것인지 여부는 소송에서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할 일이다. 즉 보험자가 텍스트형식으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이 중요한 것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답하여야 한다. 이 점은 포괄적인 질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포괄적 질문에 답하는 것이 부보하려는 위험에 대한 단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sup>33)34)</sup>

### (2) 알려진 위험 사항

보험계약자는 그 중요성 여부 및 보험자의 질문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알려진

---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1문에 나타난 기간을 경과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의사표시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이외의 상황을 추가적으로 알려야 한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 경우 고지의무의 위반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정이나 보험자의 급부이행의 확정이나 범위에 인과관계가 있는 한 보험자는 급부의무가 없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악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급부의무가 없다. (3) 제19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험자의 권리는 계약 체결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고의 또는 악의로 위반한 경우에 그 기간은 10년으로 된다.

29) Amtliche Begründung, S. 66.

30) 이필규·최병규·김은경,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VVG)」, 세창출판사, 2009, 132쪽.

31) Amtliche Begründung, S. 64.

32) Versicherungs-Handbuch, Rdn. 22a. Rixecker, zfs 2007, S. 370.

33) Neuhaus, r+s 2008, S. 47, Lange, r+s 2008, S. 57.

34) Langheid/Wandt,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ünchener Kommentar, Bd I, München, 2010, S. 1024.

위험사항만을 고지하여야 한다. 법개정 이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자신에게 알려진 모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였다. 이 변화를 통하여 자진한 고지의무는 사라지게 되었다. 즉 보험계약자는 모든 사항을 다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또 보험자가 질문하는 사항만을 답하면 되게 바뀌었다.

## 1) 아는 것

고지대상 사항을 아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계약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아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고지의무의 대상인 사항을 적극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sup>35)</sup> 이때 보험계약자가 위험사항의 중요성 선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텍스트형식으로 질문하는 사항만을 맞게 답하면 된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그 것의 중요성을 몰랐거나 중요하다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어도 그러하다.<sup>36)</sup> 해당 사항의 중요성을 정의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그를 증명하는 것은 보험자가 할 일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스스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도 질문하는 사항은 숨겨서는 안된다.<sup>37)</sup>

## 2) 알아야 함

문제의 위험사항을 알아야 함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부지는 보험계약자의 적극 인지를 충족하지 못한다.<sup>38)</sup> 구법하에서는 사소한 사항이나 일시적인 사항은 고지의무가 없었다. 단순히 의심만가는 사항도 고지의무가 없었다. 단순히 의심스러운 사항은 법개정 이후에도 고지의무의 대상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경미한 일시적인 사항을 명시적으로 질문한 경우에는 그를 답하여야 한다.<sup>39)</sup>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의 중요성 여부에 좌우되게 된다. 따라서 실제의, 그리고 원래부터 인식할 수 있는, 의미 없는 증상만이 여전히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sup>40)</sup> 보험자가 판단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이다. 이는 보험

35) Versicherungs-Handbuch, Rdn. 45.

36) Honsell(Hrsg.), Berliner Kommentar zum Versicherungsvertragsgesetz, 1999, § 16, Rdn. 46.

37) Langheid/Wandt,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ünchener Kommentar, Bd I, München, 2010, S. 1024.

38) BGH, NJW 1984, S. 884.

39) Bruck/Möller, Versicherungsvertragsgesetz, Bd 1, 9. Aufl., 2008, Rdn. 31.

계약자의 초보적인 견지에서 보아서도 그러하다.<sup>41)</sup>

보험자가 기왕질병에 대해 질문을 하면 고지의무이행시점에는 이미 사라졌어도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sup>42)</sup> 보험자는 특수한 질병을 질문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가 질문한 것으로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바로서 해당 보험보호를 위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 한 보험자가 질문한 모든 사항을 답하여야 한다. 그에 대한 결정 권한은 보험자에게 있다. 분쟁시 보험자는 질문한 사항의 중요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에 의하면 의사가 오진한 경우에도 해당 치료를 질문한 경우에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sup>43)</sup>

### 3) 알아 볼 의무

보험계약자가 해당 사항에 대해 잊어버린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그는 기억할 의무는 있다. 즉 보험계약자는 적정히 생각해낼 의무가 있는 것이다.<sup>44)</sup> 경우에 따라서는 기억이 나지 않음을 질문서에 표기하여야 한다.<sup>45)</sup> 보험계약자는 질문을 해볼 의무와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 결과 그를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사정을 원용할 수 없다.

### 4) 위험의 중요성

위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는 고지의무를 위하여 필요하지 않다. 즉 보험계약자는 지금까지의 보험자의 인수실무, 보험자의 위험판단을 위한 고지의무의 상관성은 알 필요는 없다. 따라서 조건적인 부담보에 해당하는 사항일지라도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그러한 사항도 위험 판단을 위하여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46)</sup>

40) BGH, NVersZ 2001, S. 71, BGH, VersR 1994, S. 711.

41) BGH, r+s 1994, S. 455.

42) 이는 구법하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OLG Hamm, r+s 1993, S. 114:

43) BGH, VersR 1994, S. 711.

44) Versicherungs-Handbuch, Rdn. 45.

45) OLG Köln, VersR 1973, S. 1017.

46) OLG Saarbrücken, VersR 2005, S. 929.

### (3) 청약서 질문의 내용

#### 1) 위험사항의 중요성

구법하에서는 서면으로 질문하면 중요사항으로 추정되었지만 2007년 개정법하에서는 텍스트형식과 중요사항이 같이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그로써 서면으로 질문하면 중요사항이라는 추정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중요한 사항은 위험인수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거절하였거나 아니면 계약에 다른 바로미터를 적용하였을 것을 가리킨다. 즉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위험을 인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결정의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sup>47)</sup>

보험자가 특정한 사항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혀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은 보험자의 인수지침이나 위험 심사 원칙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보험자가 알았다면 그러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보험료 할증(증액)을 요구하였을 것이라는 사정 또는 위험부담보(면책사유)를 설정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에 해당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중요한 사항은 위험평가에 있어서 모든 중요한 주관적, 객관적 사항을 가리킨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보험자의 견지에서 그의 각 인수실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sup>48)</sup> 이때 보험회사 각 작업자의 주관적 평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통상적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sup>49)</sup> 그 평가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보험자의 일이다.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견지에서의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sup>50)</sup>

#### 2) 중요한 사항으로 지명한 것

보험자에게 자신이 질문한 사항의 중요성에 대하여 증명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개정법 이후에도 지명한 중요한 사항은 인정된다.<sup>51)</sup> 중요성이 질문한 사항으로부터 바로 인정 될 수가 있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서 지명한 것이다.<sup>52)</sup>

47) Versicherungs-Handbuch, Rdn. 14.

48) BGH, NVersZ 2001, S. 70, BGH, VersR 1995, S. 711.

49) Römer/Langheid, Versicherungsvertragsgesetz, 4. Aufl., München, 2014, §§ 16, 17 Rdn. 14.

50) 다른 견해: Rolfs, in: Bruck/Möller, Versicherungsvertragsgesetz, Bd 1, 9. Aufl., 2008, Rdn. 37.

51) BGH, NVersZ 2001, S. 69.

52) Langheid/Wandt,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ünchener Kommentar, Bd I, München, 2010, S. 1026.

### 3) 계약을 변경하거나 저지하는 사정

새로 추가된 독일 보험계약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보험자의 형성권은 보험자가 질문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저지하는 사항인가에 좌우되게 된다. 계약을 변경하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잘못 답하면 - 고의의 경우를 제외하고 -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해당 사정 하에서 보통 체결하였을 계약내용으로 변경되어 존속된다. 법정실무에서는 그 사항이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계약을 저지하는 사항인가에 다툼이 집중될 것으로 독일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는 위험의 중요성은 차이를 가져오지 아니한다. 그리고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인지 계약을 저지하는 사항인지의 판단 역시 보험자의 위험 심사 원칙 및 원칙적인 인수지침에 의하여 결정된다.

### (4) 텍스트 형식

중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텍스트형식으로 질문하여야 한다(독일 보험계약법 제19조 제1항 제1문). 텍스트형식에 대하여는 독일 민법 제126b조가 적용된다. 즉 질문은 서면표기로 지속적으로 재생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소위 텔레언더라이팅(Teleunderwriting)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질문과 청약자의 답변이 노트북에서 텍스트로써 행하여져야 한다. 텍스트가 청약자의 면전에서 읽어진 경우에도 텍스트형식의 요건을 충족한다.<sup>53)</sup>

## 2. 독일 법제의 평가

독일에서는 2007년 고지의무를 수동적 답변의무화로 바꾸었다. 즉 보험자가 텍스트형식으로 질문한 사항만을 성실히 답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되지 않는다. 독일 입법자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그리하여 법개정 이전에는 보통 행하여졌던 포괄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독일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그러한 일반적, 포괄적 질문은 구체적이지 않고 입법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53) Marlow/Spuhl, S. 44.

보험자가 질문하는 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자명한 중요한 사항은 인정된다. 보험자가 하는 질문이 중요한 것인지 여부는 소송에서 보험자 스스로가 증명하여야 할 일이다. 그러나 법개정 이후에도 독일 보험계약법 제22조에 의하여 악의의 기망에 의한 취소는 여전히 가능하다.

## V. 분석과 제도이용방안

고지의무제도는 보험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고지의무를 둘러싸고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또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는 이론분야이다. 한편 보험제도는 선의성, 사행계약성을 특징으로 한다. 보험자는 정보를 보험계약자에 의존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계약자측에게 고지의무를 인정하되 법에서는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여 놓고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야 하고 인과관계도 따진다. 본 사안의 경우에 계약체결이 다소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즉 노래방 주인이 노래방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였다. 그리고 보험가입 2일 후 피보험자가 폐결핵으로 사망한 경우이었다. 폐결핵 질병은 없다가 갑자기 생겨나는 질병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인 노래방 주인이 종업원의 질병을 인지하고 보험가입에 나아갔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고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보험자는 제척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과거 대법원은 갑상선 결절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을 확정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이었으므로 고지의무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sup>54)</sup> 하지만 폐결핵과 같은 중대 질병은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중대질병의 불고지와 실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대상 판결의 판지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피보험자의 신체에 중대한 이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추후의 불이익을 피하는 방도가 될 수 있다.<sup>55)</sup>

54) 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다103349 판결.

## VI. 맺음말

오늘날 국민들의 경제적 안전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민영보험제도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나 의료보험제도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는 임의의 안전정치가 바로 민영보험이다. 보험제도는 각종 사고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보험가입을 통하여 공동비축자금을 조성하고 사고가 발생한 특정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일종의 상부상조하는 구조이다. 같은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들은 일종의 보험단체를 구성한다. 그 단체를 잘 관리하는 것은 보험자의 몫이다. 보험자는 따라서 구성원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고지의무제도이다. 보험제도의 우연성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고지의무제도를 통하여 보험계약자들이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국가는 보험자가 묻는 것만을 성실히 답하면 되는 수동적 답변의무화를 법률에 규정을 하였다. 우리의 경우는 아직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지만 장차 그렇게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폐결핵과 같은 중대한 질병은 직장에서도 그 정보를 공유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작은 직장 내에서 주인이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중대 질병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으로도 고지의무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유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를 통하여 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55) 동지: 이가형,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판단,” 「손해보험」 제608호, 2019.7, 61쪽.

## 참고문헌

- 김명수, 「보험판례개관」, 법문사, 2013.
- 김선정, “보험사고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보험자는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생명보험」 2017년 9월호
-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 김형진,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적 연구, 건국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20.02.
- 박세민, 「보험법」, 제4판, 박영사, 2017.
- 보험경영연구회, 「보험론」, 문영사, 2005.
- 송옥렬, 「상법강의」 제6판, 홍문사, 2016.
-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5.
- 유주선, 「보험법」, 도서출판 씨아이알, 2018.
- 이가형,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판단,” 「손해보험」 제608호, 2019.7.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 이성남, 「보험모집규제론」, 마인드랩, 2017.
- 이준교·정찬목, 「판례를 통하여 배우는 보험이론 및 분쟁실무」, 보험연수원, 2017.
- 이필규·최병규·김은경,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VVG)」, 세창출판사, 2009.
- 정상근, 「보험계약법」, 도서출판 좋은땅, 2006.
-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17판, 박영사, 2015.
- 장덕조, 「보험법」 제4판, 법문사, 2018.
- 채이식, 「상법강의(하)」 개정판, 박영사, 2003.
- 최기원,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02.
- 최정식, 「보험·해상법」, 삼영사, 2014.
-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제9판, 삼영사, 2015.

■ 保險法研究 14권 1호 (2020)

한기정, 「보험법」, 제2판, 박영사, 2018.

한창희, 「보험법」, 개정3판,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7.

Bruck/Möller, Versicherungsvertragsgesetz, Bd 1, 9. Aufl., 2008.

Honsell(Hrsg.), Berliner Kommentar zum Versicherungsvertragsgesetz, 1999.

Langheid/Wandt,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ünchener Kommentar, Bd I, München, 2010.

Looschelders/Pohlman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Köln, 2010.

Prölss/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30. Aufl., München, 2018.

Römer/Langheid, Versicherungsvertragsgesetz, 4. Aufl., München, 2014.

<Abstract>

**A study on critical illness death 2 years after insurance contract and violation of disclosure duty - focused on the commentary about the case of Korean Supreme Court 2018Da281241 -**

**Choi, Byeong Gyu**

The private insurance system complements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the state and plays a role of a safety board when the people are in trouble, so as to give stability to economic life. The most important and most disputed area of the insurance system is the obligation. The disclosure obligation is also linked to the fact that the insurance system is characterized by gambling and well-being. Even if it is disadvantageous or confusing to you, you should notify it. If you do not notice correctly and meet several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other policyholders, you will be penalized for not receiving the insurance even if an accident occur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properly fulfill the disclosure obligation in the insurance field. The insurance system is characterized by the goodness of the good and the gambling contract. There is also a need for the insurer to rely on the policyholder for information. In this respect, the insurance contractor is obliged to notify the obligation to notify, but the law has various arrangements to protect the policy contractor. Intentional or grave error shall violate the disclosure obligation and the causal relationship shall be established. The notice is importan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insurer may influence whether the insurance is taken or not and the amount of the insurance premium. If the insurer knows the fact, he objectively thinks that he did not conclude the contract or conclude the contract at least under the same conditions. Whether or not an important matter is finally solved through the accumulation of cases. This shall not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subjective judgment of the

parties. Determining whether an important matter is an insurer is not an insurer that actually signs an insurance contract, but an insider concept as a personified concept of professional risk acceptance criteria that a court may consider in resolving an incident. In the case of the subject matter examined in this article, it is a case where the contract is somewhat unusual. In other words, the owner of the karaoke concluded an insurance contract with a karaoke employee as an insured person, and made himself an insurance beneficiary. And 2 days after the insured person died of tuberculosis. Pulmonary tuberculosis is not a disease that does not happen suddenly.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owner of the karaoke, an insurance contractor, has inflicted on the employee's illness and proceeded to insure. And the disclosure obligation is the policyholder and insured person. In this case, the insurer should be considered to be able to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and refuse to pay the insurance due to violation of the notice obligation due to intentional or grave error. There is also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llness and accident that has not been noticed. Therefore, the cardboard of the judgment will be reasonable. In the future, efforts should be made to classify and to provide predictability through accumulation of various precedents related to the disclosure obligation. Through this, it will become possible to operate the insurance system stably.

**Key Words** : aleatory contract, character of good faith, duty of disclosure, willfulness·gross negligenc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exclusion period, material items, cancellation of contract